

2026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7회기 (7월)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여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공백 발생 시담당교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정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 7회기 공지사항

지원 우선 순위	직무교육 > 결혼 > 연차 > 예비군 훈련 > 건강검진 > 자율관리 컨설팅 > 승급교육 및 원장사전직무교육 > 긴급 지원 > 유휴지원
지원 기간	▶ 2026. 07. 01.(수) ~ 2026. 07. 31.(금)
신청 기간	▶ 2026. 06. 01.(월) ~ 2026. 06. 10.(수)
미 배치 기간	▶ 7월 24일(금) 대체교사 간담회, 대체교사 연차신청일
배치 확인	▶ 배치확인일 : 2026년 6월 15일(월) 15:00 이후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며 배치 결과는 개별공지 하지않습니다. ▶ 확인방법 : 보육통합시스템 상태 - '배치' : 배치됨, '신청' : 배치 안됨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안내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메뉴보기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탭 → 항목 선택(보수교육, 결혼, 연가, 예비군, 건강검진, 긴급지원) → 휴가신청교사 → '7회기 클릭' → 연차예정기간 입력 →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 저장 클릭 ■ '결혼' 선택 시 휴가기간 입력 후 증빙자료 삽입 (예: 청첩장, 웨딩홀계약서) ※ 보조교사 등은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 사업 지침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준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3	연가								1~15일			
	4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5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회당1일	수시 신청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가족상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가 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일 3일 3일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신청 회기 안내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안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결혼·법정연가보장과 보수교육 참여시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을 보장해 주시고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무지시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에 명시된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외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